

## 어린이집 긴급보육 방역관리 현행 지침 요약

※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, 사회복지시설 공통 지침에 기반하되, 어린이집 특수성 반영하여  
2월 3일, 2월 24일, 2월 27일, 3월 19일에 시행

### 1. 긴급보육 운영

- (이용 요건) 긴급보육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 신청 시 긴급보육 이용 가능하며, 보육시간은 평상시와 같이 7:30~19:30 원칙
- (반 편성) 연령통합보육 가능하며, 통합보육 시에는 가장 낮은 연령 기준으로 반 편성

### 2. 등원 및 출입 시

- (등원중단 및 업무배제) 코로나19 위험 지역 여행력 있는 아동·교직원,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대상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
- (외부인 출입금지) 외부인은 어린이집 출입할 수 없으며, 불가피한 경우 방역조치(접촉 이력 및 증상 확인, 마스크 착용 등) 후 제한적 출입

### 3. 등원 후 어린이집 내

- (감염예방 철저) 교직원 등 개인위생 준수, 아동 및 교직원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(책임자 지정)
- (위생물품 비치) 어린이집 내 화장실 개수대 등에 손 세척제(비누, 손소독제 등)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
- (소독 철저) 보육실 교재교구 등 매일 1회,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, 주기적 환기 등 어린이집 자체소독 지침 준수

\* 이용 전후 창문을 열어 환기, 보육시간 동안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량 증가

- (접촉 자제) 아동·교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불필요한 접촉 자제



#### 4. 급·간식과 활동 시

- (급·간식) 식사 전·후 손씻기 철저, 식사시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일정 거리 유지, 일렬 식사 권장
- (활동 요령) 수면·배변지도, 생활습관 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접촉 자제하고, 각종 집단활동(체육·음악 등) 시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

#### 5. 긴급상황 발생 시

- (발생 예방) 발열(37.5°C 이상) 또는 호흡기 유증상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원중단 또는 업무배제
- (확진자·접촉자 발생 시) 발생 즉시 보호자 및 시·군·구에 알리고 어린이집 일시폐쇄(전면 출입통제)
  - 확진자 발생 시 14일간, 접촉자 발생 시 격리해제시까지 어린이집을 일시폐쇄하고,
  - 보건소 또는 소독업체에 의뢰하여 즉시 소독 실시
- (유증상자 발생 시) 교사가 유증상자일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증상에 따라 검사 등 실시토록 하고, 아동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, 하원 후 증상에 따라 진료, 검사 등 실시 안내
  - \* 유증상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유관기관(보건소, 소방서, 선별진료소, 의료기관 등)과 비상연락체계 상시 구축 필요
  - (공간 확보) 보호자 내원 전까지 어린이집 내 유증상 아동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(환기 가능하고 문을 닫을 수 있는 공간)을 확보
    - \* 보호자 내원 전이라도 보호자 동의 하에 교직원이 동행하여 지정 의료기관 진료 등 실시
  - (이송 전 대기) 유증상 아동은 마스크 착용하고, 격리공간에서 교직원과 대기
    - \* 의심환자와 접촉하는 사람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
  - (이송 후) 알코올·락스 등 소독제로 환자가 머무른 장소 청소